「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4. 3. 20

환 경 부

목 차

1. 사업 목적 및 개요 1

2. 보조금 집행 기준 2

3. 보조금의 집행 절차 4

4. 보조사업 관리 7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다.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총 32,000백만원(국비 기준)

라.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고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여부 등)

○ 한국환경공단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시스템 운영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시스템 관련 콜센터 운영
- 보조금 지원 차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록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2. 보조금 집행 기준

가.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하는 경우

○ 다만, ①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나.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1과 같음

구분	유형	일반형				기타형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국비+지방비)		**140**	**230**	**270**	**300**	**270**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분류

※ 단, 기타형 중에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연비보조금(60만원)+배터리보조금(135만원)+등판보조금(105만원))으로 함

※ 화물운반용 이륜자동차는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바닥 면적이 0.5㎡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하대옵셋트 수치가 "-"가 아닌 차량이어야함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를 제출받아 확인

○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 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0대50으로 하여 최대지원액(국비+지방비) 금액 이내에서 산정

※ 단,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최대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 기간을 설정하고 부품의 수리·교체 비용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한 제작·수입사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

** 보험(공제) 담보범위, 가입금액, 보상기간, 보상조건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작·수입사는 해당보험(공제) 증서 및 증권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 판매 지역(광역지자체 단위)에 A/S 대리점을 지정하고, 예비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을 10대분 이상 확보한 제작·수입사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

※ 별표 3에 따라 3.19일까지 환경부에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다만, 제작·수입사간 공동 A/S망을 구축·활용하고 있음을 환경부에 증빙하는 경우 상기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3. 보조금 집행 절차

가. 보조금 집행 체계

< 민간부문 >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구매자→이륜차 제작·수입사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신고 (2개월 이내 원칙)	이륜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신고 후 10일 이내)	이륜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이륜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나. 보조금 집행 절차

< 민간부문 >

①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함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일로 삼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임을 환경부에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공고내용에 추가 가능

※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② (구매지원 신청·접수)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함

③ (지원대상자 검토·선정)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신청순번은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부여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제조·수입사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례의 보완 기회(1차: 7일, 2차: 5일)를 제공해야 하며, 2차 보완 이후에도 적정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등에게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이 경우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전기이륜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이하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전기이륜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배달 목적 사용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배달 목적 사용 지원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제작·수입사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기한 한시적 연장 가능

④ (보조금 집행)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제조·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사용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 거주지 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최소자부담 증빙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집행절차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 시스템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기관 구매 지원 시 본인 확인을 위한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수량 제한 및 사업목적 증빙서류 제출 요구 등 추가조건 설정 가능

< 공공부문 >

① (차량 구매)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2호의 신청서와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② (보조금 집행)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4. 보조사업 관리

가. 관리대장 작성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집행실적(별지 제3호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보고해야 함(필요시 수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완료보고(별지 제4호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보고해야 함

나. 제작·수입사 현장관리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가 적정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 미이행 시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다. 의무운행기간

○ 전기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차량의 최초 신고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 폐지 신고를 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기준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에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국비 환수액을 반납해야 함

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관련 규정, 환경부가 설정한 교부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집행해서는 안됨

- 또한, 전기이륜차 구매자 또는 구매자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는 제작·수입사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구매자 명의 도용, 교부목적 외 용도 사용 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즉시 환수해야 함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나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 인증받은 내용 및 보급대상 평가받은 내용대로 차량을 판매하지 않거나, 배터리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환경부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전기이륜차 구매자 또는 구매자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제작·수입사 등에 대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자체 편성한 지방비보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해야 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출방식
2. 보험(공제) 조건
3. 사후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조건

[별지 서식]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진행 보고)
4.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완료 보고)

〔별표 1〕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전기이륜차의 성능은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를 적용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배터리보조금(규모별금액×배터리계수) + 등판보조금(규모별금액×등판계수)

○ 연비, 배터리 및 등판 보조금은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유형(일반형, 기타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성능항목별 보조금의 합계는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단위 : 만원)

구분	일반형				기타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연비(20%)	28	46	54	60	54
배터리(45%)	63	103.5	121.5	135	121.5
등판(35%)	49	80.5	94.5	105	94.5
보조금 상한	140	230	270	300	270

※ 단, 기타형 중에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연비보조금(60만원)+배터리보조금(135만원)+등판보조금(105만원))으로 함

※ 화물운반용 이륜자동차는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바닥 면적이 0.5㎡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른 하대옵셋트 수치가 "-"가 아닌 차량이어야함

○ 연비계수*는 보급대상 전기이륜차 기준 최고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연비 비율을 말함

* 연비계수 = 가중연비 ÷ 최고가중연비

- (가중연비) 해당 차량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 + (저온연비×0.25)

* 상온(저온)연비 = 1 ÷ 상온(저온)소비율

- (최고가중연비) 보급대상 전기이륜차의 가중연비 중 상위 3개 가중연비의 평균을 말함

* 상기한 '보급대상 전기이륜차'는 2023.9.30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한 차량을 말함(평가시험 통과일로부터 2년 경과 또는 단종 차량은 제외)

* 2023.9.30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한 차량이 없는 중·대형의 경우에는 소형 전기이륜차의 최고가중연비를 적용함

○ 배터리계수는 해당 차량의 배터리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구분	배터리 계수 산식
경형	(0.35×배터리용량) - 0.05, 배터리용량 4.4kWh 이상 1.5
소·중·대형	(0.3×배터리용량) - 0.05, 배터리용량 5.0kWh 이상 1.5
기타형(전체)	(0.3×배터리용량) - 0.05, 배터리용량 5.0kWh 이상 1.5

○ 등판계수*는 보급대상 전기이륜차 기준 평균가중등판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등판 비율에 공차중량에 따른 차등계수**를 적용한 값을 말함

* 등판계수 = (가중등판 ÷ 평균가중등판) × 차등계수

** [경형] (공차중량 86~95kg) 등판성능보조금×1.0 / (~85kg) 등판성능보조금×0.9 / (96kg~) 등판성능보조금×1.1
[소중대형] (공차중량 100~119kg) 등판성능보조금×1.0 / (~99kg) 등판성능보조금×0.9 / (120kg~) 등판성능보조금×1.1
[기타형] (공차중량 100~130kg) 등판성능보조금×1.0 / (~99kg) 등판성능보조금×0.9 / (131kg~) 등판성능보조금×1.1

- (가중등판) 해당 차량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등판능력을 말함

* 가중등판 = [(상온등판×0.75) + (저온등판×0.25)]

- (평균가중등판) 보급대상 전기이륜차의 전체 가중등판의 평균에 20(%)를 더한 등판능력을 말함

* 상기한 '보급대상 전기이륜차'는 2023.9.30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한 차량을 말함(평가시험 통과일로부터 2년 경과 또는 단종 차량은 제외)

* 2023.9.30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통과한 차량이 없는 중·대형의 경우에는 소형 전기이륜차의 평균가중등판을 적용함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규모·유형, 성능별 보조금의 60% 지급

※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가입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배터리를 소유하고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대여하는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이하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가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차량에 보조금 지급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의 일정비율(최소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수입사에 지불)해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일정비율(일반경형, 기타형 경형: 50% / 소·중형, 기타형 소형: 45% / 대형, 기타형 화물: 40%)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

※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별표 2〕

보험(공제) 조건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부품의 수리·교체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공제) 증서 또는 증권을 환경부에 의무 제출하여야 함

- 보험(공제) 담보범위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보증수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도산 또는 보증수리 신청을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시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부품의 수리·교체 비용을 담보
- 보험(공제) 가입금액 : 해당 전기이륜차 판매가격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
- 보상기간 : 해당 전기이륜차 신고일로부터 2년
- 보상조건 : 보험사(공제조합)는 피보험자(피공제자, 피해자 포함)가 보험(공제)금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영업일) 이내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하여야 함

〔별표 3〕

사후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조건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판매 지역(광역지자체 단위)에 대해 A/S 대리점을 지정하고, 예비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10대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포함한 아래의 사항들을 환경부에 2024년 3월 19일까지 증빙해야함

- (A/S 대리점) 판매지역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별 최소 1개 이상의 A/S 대리점(이륜차 정비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지 최소 2년 이상)을 지정*하고 판매하는 이륜차의 정비·수리 관련 교육을 해당 A/S대리점에 실시했음을 증빙**해야 함

* A/S 대리점 현황(상호명, 주소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체-A/S 대리점 계약서 등 제출 필요

** 교육 실시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업 추진 중 지정한 A/S 대리점이 없는 광역지자체에 판매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 판매 시작 한달전까지 해당 광역지자체에 A/S 대리점을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부품 확보 증빙) 본사 또는 공장 등 업체가 관리하기 용이한 부품 보관 장소를 자율적으로 1개 이상 지정하고 아래의 항목을 표기한 부품 입고 사진을 분기별로 제출 필요

※ 보관장소, 촬영일시, 부품명, 부품수량(10개 이상)

○ 단, 업체들이 공동 A/S망을 구축·활용함을 환경부에 2024년 3월 19일까지 증빙하는 경우 A/S 대리점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함

- 공동 A/S망을 활용하는 경우 모든 광역지자체별로 A/S대리점을 지정하여 전국 A/S망을 구축하고 긴급출동서비스 등 사후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업체별로 부품 확보 증빙 제출 필요

- 공동 A/S망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협회는 공동 A/S망 구축확인서 및 업체별 이용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대리 증빙 가능

- 공동 A/S망 구축확인서 제출 시 전국 A/S망 구축 증빙자료*, 전산망(사이트) 주소, 콜센터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지자체별 A/S 대리점 현황(상호명, 주소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체-A/S 대리점 계약서 등 제출 필요

** 전화번호, 주소, 인력 현황 등

※ 공동 A/S망을 운영하는 경우 분기별로 운영 실적(상담건수, 수리건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만일 업체별 판매 개시 시점이 상기 사항 증빙 제출 기한('24년 3월 19일)보다 늦을 경우, 증빙 제출 기한까지 판매 개시 시점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해당 시점 도래 한달전까지 상기 사항들을 증빙(제출)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table>
<tr><td colspan="2">신청기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사업기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8">신청
내역</td><td rowspan="2">전년이월</td><td>금액</td><td></td></tr>
<tr><td>물량</td><td></td></tr>
<tr><td rowspan="2">금년계획</td><td>금액</td><td></td></tr>
<tr><td>물량</td><td></td></tr>
<tr><td rowspan="2">금회신청</td><td>금액</td><td></td></tr>
<tr><td>물량</td><td></td></tr>
<tr><td rowspan="2">신청누계</td><td>금액</td><td></td></tr>
<tr><td>물량</td><td></td></tr>
<tr><td colspan="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경부 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4">※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OOO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분기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단위 : 대)

구분	총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이륜차										

〔비고〕 차량별 보급 대수 : 000EV 0대, 00EV 0대, 0EV 0대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분기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보조금 현액(c＝a＋b)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 특기사항(부진사유 등)

○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단위 : 대)

구분	총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이륜차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당해 연도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b)		
보조금현액(c=a+b)		
집행액 누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액		
이월액		
불용액		
이·불용 사유		

가. 예산집행 증빙서류

나. 전기이륜차 구매자·기관 리스트

다.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MINISTRY OF ENVIRONMENT
환 경 부